



수출입 및 보증거래에 관한 상품설명서

본인은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과 수출입 및 보증거래거래를 함에 있어 은행직원과 상담하여 아래에서 설명한 내용을 포함하여 수출입 및 보증거래의 주요내용 및 고객부담비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본인은 은행직원으로부터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판매자명/연락처:

고객확인 : 20 . .

고객명 :

서명/인

이 설명서는 은행이용자의 수출입 및 보증거래에 대한 이해를 돋고 수출거래약정서, 수입거래약정서, 지급보증거래 기본약정서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실제 계약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및 수출거래약정서, 수입거래약정서, 지급보증거래 기본약정서가 적용됩니다. 계약을 신청하는 경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및 수출거래약정서, 수입거래약정서 혹은 지급보증거래 기본약정서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계약서류가 교부됩니다.

1. 거래 상품명 및 금리인하요구권 적용여부

거래 상품이 다수인 경우, 은행직원의 설명을 듣고 해당되는 “□” 내에 “V” 표시 합니다)

상품명

- 소구조건부 수출환어음 매입(신용장/무신용장 방식)
- 포페이팅
- 수입신용장 개설
- 수입거래 관련파이낸싱 (내국수입유산스 등)
- 수출입 서류 추심/신용장 통지/신용장 확인
- 수출입 관련 대출(수입결제용 외화대출 등)
- 은행 보증서 및 보증신용장
- 비소구조건부 매출채권 할인
- 소구조건부 매출채권 할인
- 공급망금융(구매론 및 서플라이체인 파이낸싱)

금리인하요구권대상 여부

- | | | | |
|-----------------------------|---|-----------------------------------|------------------------------|
| <input type="checkbox"/> 대상 | <input type="checkbox"/> 비대상 | <input type="checkbox"/> 대상 | <input type="checkbox"/> 비대상 |
| <input type="checkbox"/> 대상 | <input type="checkbox"/> 비대상 | <input type="checkbox"/> 대상 | <input type="checkbox"/> 비대상 |
| <input type="checkbox"/> 대상 | <input checked="" type="checkbox"/> 비대상 | <input type="checkbox"/> 대상 | <input type="checkbox"/> 비대상 |
| <input type="checkbox"/> 대상 | <input type="checkbox"/> 비대상 | <input type="checkbox"/> 대상 | <input type="checkbox"/> 비대상 |
| <input type="checkbox"/> 대상 | <input type="checkbox"/> 비대상 | <input type="checkbox"/> 대상 | <input type="checkbox"/> 비대상 |
| <input type="checkbox"/> 대상 | <input type="checkbox"/> 비대상 | <input type="checkbox"/> 대상(국내거래) | <input type="checkbox"/> 비대상 |
| <input type="checkbox"/> 대상 | <input type="checkbox"/> 비대상 | <input type="checkbox"/> 대상(국내거래) | <input type="checkbox"/> 비대상 |
| <input type="checkbox"/> 대상 | <input type="checkbox"/> 비대상 | <input type="checkbox"/> 대상(국내거래) | <input type="checkbox"/> 비대상 |
| <input type="checkbox"/> 대상 | <input type="checkbox"/> 비대상 | <input type="checkbox"/> 대상(국내거래) | <input type="checkbox"/> 비대상 |

금소법적용대상 여부

· **수출입금융 거래관련 상품 이외의 대출성 상품의 경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 일반금융소비자 대상여부
(일반금융소비자로 취급을 요구한 경우 포함)

: 대상 비대상

2. 수출입 및 보증거래 관련 비용 - 거래 기간에 따라 부과되는 비용

- 환가료** : 은행의 자금부담에 따른 이자조로 지급하는 주주료로 기간에 따라 환가료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일람불 수출환어음매입 관련 환가료**
[매입금액 X 적용금리 (매입일의 일람불 환가료율 즉, 기준금리 + 가산금리) X 표준우편일수 7 역일 / 360]

· **기한부 수출환어음매입 관련 환가료**
[매입금액 X 적용금리 (매입일의 기간별 환가료율 즉, 기준금리 + 가산금리) X 기간일수 / 360]

□ 수입신용장 개설/지급보증수수료

· **수입신용장 개설시 : 발행 수수료**
[발행금액 X 발행 수수료율 (신용등급 등에 따라 차등) X 기간일수 / 360]

· **수입신용장 관련 수입서류 인수시 : 인수 수수료**
[인수금액 X 인수 수수료율 (신용등급 등에 따라 차등) X 기간일수 / 360]

*참고사항 : 발행수수료와 인수 수수료가 **중복되는 기간에 대해 발행수수료를 환급**하여 드립니다.

· **지급보증(보증신용장 포함)시 : 보증 수수료**

[보증금액 X 보증 수수료율 (신용등급 등에 따라 차등) X 기간일수 / 360]

*참고사항 : 지급보증 대지급금은 상법 상 상사법정이율에 **연체 가산금리 3%**를 더하여 적용합니다.

수입거래 관련 파이낸싱 및 수출입관련 대출
[대출금액 X 적용금리 (기준금리 + 가산금리) X 기간일수 / 360]

매출채권 할인
[매출채권금액 X 적용금리 (기준금리 + 가산금리) X 기간일수 / 360]

구매론 및 서플라이체인 파이낸싱
[증인금액 X 적용금리 (기준금리 + 가산금리) X 기간일수 / 360]

신용장 확인수수료
[수출신용장금액 X 확인수수료율 (개설은행, 개설국가, 신용등급 등에 따라 차등) X 기간일수 / 360]

<유의사항>

- + 수출입 및 보증거래시 고정금리가 적용됩니다.
고정금리 : 여신실행시 결정한 금리가 약정기간동안 동일하게 적용되는 금리입니다. 다만, 여신실행일 현재 은행에서 고시하는 기준금리의 변동에 따라 금리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비용 계산시 KRW/GBP/HKD/SGD 통화의 경우 360 일 대신 365 일을 적용합니다.
- + KRW 거래시 대상기간이 윤년인 경우에 한하여 366 일이 적용됩니다.
- + 관련 외화비용을 원화로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은행은 적용환율을 제공하고, 고객이 이를 동의하고 해당 금액을 납입한 경우 원화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적용 기준금리 – 통화별 지표금리>

+ USD : Term SOFR (Secured Overnight Financing Rate) 지표금리

Term SOFR 지표금리란 관련 이자기간에 대응하는 Term SOFR screen rate로서 CME Group Benchmark Administration Limited 가 이자의 최초기산일 1 영업일 전 고시하는 금리를 의미합니다.

+ EUR : EURIBOR 지표금리

EURIBOR 지표금리란 European Money Market Institute 가 이자 최초기산일 1 영업일 전 브뤼셀 시간 오전 11 시에 고시하는 EURIBOR screen rate로서 특정 로이터 화면에 표시되는 금리를 의미합니다.

+ JPY : TIBOR (Tokyo Interbank Offered Rate) 지표금리

TIBOR 지표금리란 일본 전국은행협회(Japanese Bankers Association)가 이자 최초기산일 1 영업일 전 동경 시간 오전 11 시에 고시하는 TIBOR screen rate로서 특정 로이터 화면에 표시되는 금리를 의미합니다.

+ GBP : SONIA (Sterling Overnight Index Average) term 지표금리

SONIA term 지표금리란 ICE Benchmark Administration 이 이자기간에 대응하여 고시하는 Term SONIA screen rate를 의미합니다.

+ CHF : Swiss National Bank Policy Rate (SNB) rate

Swiss National Bank Policy rate란 고시일 오전 11 시 기준으로 스위스 국립은행 웹사이트에 표시된 스위스 국립은행의 정책금리를 의미합니다.

+ RMB(Renminbi) : CNH HIBOR (Hongkong Interbank Offered Rate)

CNH HIBOR란 HongKong Treasury Markets Association 이 이자 최초기산일 1 영업일 전 홍콩시간 오전 11:15 분에 고시하는 CNH interbank market rate를 의미합니다.

+ 이자기간에 대한 screen rate가 고시되지 않을 경우, 고시된 가장 짧은 screen rate로서 해당 이자기간 보다 긴 screen rate를 적용합니다.

+ 기준금리 적용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은행 홈페이지 (<http://www.hsbc.c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USD/EUR/JPY/GBP/CHF/CNH 이외의 통화는 은행의 자금조달 비용을 기준금리로 적용합니다.

+ 거래조건이 대한민국 원화(KRW)인 경우 적용 기준금리란 CD 수익률을 의미합니다. CD 수익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 설명서 6 페이지의 CD 수익률 설명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적용금리 계산시 기준금리가 마이너스인 경우 기준금리는 0 으로 적용됩니다.

수출입 및 보증거래시 적용금리 및 수수료율 결정(변동) 요인

- . 수출입 및 보증거래시 적용금리 및 수수료율은 원가 요소와 마진을 반영하여 결정됩니다. 원가요소는 ① 은행의 자금조달 비용, ② 고객 신용도에 따른 신용원가, ③제비용인 업무원가, ④출연료, 교육세 등 법적 비용 등을 고려하여 은행이 결정하며, 결정된 적용금리 및 수수료율은 개별약정에 의해 별도로 정한 항목 (변동 금리대출의 기준금리, 거래실적에 따른 우대금리, 신용 등급평가 조정에 의한 신용원가 등) 이외에는 개별 거래의 만기일 까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기한연장, 채무자변경 등 거래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 당시의 원가요소와 마진을 기준으로 적용금리 및 수수료율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고객에게 적용되는 적용금리 및 수수료율은 고객의 신용등급 및 담보 유무, 거래상품의 특성, 지급인의 신용도, 거래 기간등에 따라 달리 적용됩니다.

3. 수출입 및 보증거래 관련 비용 – 거래 및 서비스 횟수에 따라 부과되는 비용

- 신용장 통지/양도 수수료** : 신용장 통지/양도시 부과됩니다.
- 추심수수료** : 수출입 서류의 추심거래시 적용됩니다.
- 취급수수료** : 거래상품에 따라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부대비용**
 - 우편료** : 우편도착지, 서류 중량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전신료** : 전신문 횟수 및 분량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상환수수료** : 신용장하의 수출환어음 매입 또는 포페이팅 거래와 관련하여, 만기에 해외 개설은행으로부터 대금을 상환시 상환 은행의 수수료가 공제됩니다. 이 경우, 거래의 편의를 위해 해당 수수료 명목으로 매입시 사전에 공제하는 수수료입니다.

* 상환수수료 예시

상환 수수료를 USD150 사전에 납부한 경우, 만기에 USD200 까지 공제된 상환은행 수수료는 고객에게 청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납부된 상환수수료가 실제 공제된 상환은행의 수수료보다 큰 경우에도 차액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상환수수료	공제금액 예시	추가부담금액
USD150	USD120	0 (환출금액 없음)
	USD180	0 (추가청구 없음)
	USD230	USD 30 (USD200 초과금)

- 중도상환수수료** : 개별 거래의 만기일 전에 해당 금액이 지급인 또는 고객으로부터 상환될 경우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 기타수수료 :

항목 () 금액 ()
항목 () 금액 ()

-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 4 조(비용의 부담)에 의거하여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수출입 및 보증거래 관련 수수료 등은 은행 홈페이지 (<http://www.hsbc.c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금리인하요구권

- 채무자는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예: 재무상태 개선, 신용평가등급 상승)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은 금리인하 요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은행은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고객에게 신용상태 개선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여 금리인하 요구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등 은행 심사 결과에 따라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는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은행은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 영업일 이내**(고객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에 **금리인하 요구 수용 여부 및 그 사유를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5. 수출입 및 보증거래 관련 비용의 납입방법

- 수출입 및 보증거래 관련 비용은 **거래전 미리 납부**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수입거래 관련 파이낸싱 및 수출입관련 대출 관련 비용은 만기에 원금과 함께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지급보증거래의 경우 납입방법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세부적인 사항은 지급보증거래 기본약정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수출입 및 보증거래 상환방법

- 건별 만기일 또는 예정 대체일에 **원금의 일시 상환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보증서 및 보증신용장 등은 수익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즉시 상환하여야 합니다.
- 기타 상환방법은 수출거래약정서, 수입거래약정서 및 지급보증 거래 기본약정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7. 연체이자율(지연배상금률)

- 지연배상금률(연체이자율)

- 연체이자율은 [적용금리 + 연체가산이자율]로 적용합니다.
- 연체가산이자율은 다음과 같이 적용합니다.

- 연체가산이자율 : 연 3%

- 연체이자율은 최고 연 17%로 합니다.
- 상품에 따라 연체이자율이 일부 달라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약정서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연체이자(지연배상금)를 내셔야 하는 경우

· 「이자를 납입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

☞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14 일까지는 내셔야 할 약정이자에 대해 연체이자가 적용되고, 14 일이 경과하면 기한이익상실로 인하여 거래원금에 연체이율을 곱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 「원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비소구상품을 제외하고, 수출입 및 보증거래 상환 방법에서 정한 기일을 경과하여 지급인으로부터 대금이 입금되지 아니하거나 은행이 정한 기간이내에 화환 어음의 인수가 이루어지지 않아 원금을 상환하는 경우, 원금을 상환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는 원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 기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 7 조에서 정한 대출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 사유에 해당되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때

☞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날부터 대출원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8. 담보권 설정 및 권리변동

- 수출입 및 보증거래와 관련하여 담보물을 제공한 경우, 은행은 채권보전을 위해 제공받은 **담보물에 담보권(저당권, 질권 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수출입 및 보증거래의 변제기가 도래하였거나 기한이익이 상실 되었음에도 채무가 상환되지 않은 경우, 은행은 법정절차에 따라 **담보물을 처분하여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담보제공자는 담보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9. 유의사항

□ 수출입 및 보증거래의 제한

- 당행은 연체거래(대출 및 지급보증대지급금 포함) 보유자, 당행에 손해를 끼친 자, 신용도 판단정보 등록자 및

은행이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출입 및 보증거래를 취급하지 않거나 제한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

□ 대출기한 전에 채무를 상환해야 하는 경우

(대출이라 함은 은행이 선지급하였으나 상환받지 못한 모든 수출입 및 보증거래를 포함하며, 기한의 이익 상실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한의 이익이란?

기한의 존재로 말미암아 당사자가 받는 이익을 말하며, 은행과의 대출거래에서 채무자인 고객은 당초 약정한 대출기한까지는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아도 되므로 그 기간동안 채무자인 고객이 가지는 이익을 기한의 이익이라 합니다.

☞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면?

- 모든 대출금(또는 해당 대출금)을 즉시 상환
- 연체이자 부담
- 일정기간 경과 후 신용도판단정보 등록 등

· 채무자인 고객 소유의 예금, 담보부동산에 법원이나 세무서 등으로부터의 (가)압류명령 등이 있는 때 등

☞ 은행으로부터 별도 청구가 없더라도 모든 대출금(또는 해당 대출금)을 대출기한이 도래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곧 상환하셔야 합니다.

· 대출기한이 도래되었거나 기한이익이 상실된 대출을 하나라도 상환하지 아니한 때 등

☞ 은행의 서면청구에 의해 모든 대출금(또는 해당 대출금)을 대출기한이 도래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곧 상환하셔야 합니다.

□ '연체정보등' 등록

· 대출원금, 이자 등을 3 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에는 3 개월이 되는 날을 등록사유 발생일로 하여 그 때로부터 7 영업일 이내에 '연체정보등'이 등록됩니다.

☞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개정으로 '연체정보등' 정보등록 기준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연체정보등'이 등록되면, 금융거래제약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체정보등'이 등록된 후 연체금액을 상환하여 등록사유가 해제되는 경우에도 등록기간 및 금액에 따라 해제기록이 1년 동안 남아 있을 수 있어 동 기록으로 인해 금융상의 불편이 초래될 수도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은행·채무자로부터의 상계

- 상계란 채무자와 은행이 서로에 대해 금전 채무와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일방적 의사표시로 서로의 채무와 채권을 같은 액수만큼 소멸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 은행은 대출 등 채무의 변제기에 도래하였거나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 등의 사유로, 채무자의 대출 등 그 채무와 채무자의 은행에 대한 예금 기타의 채권과를 그 채권의 기한도래 여부에도 불구하고 서면 통지에 의하여 상계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는 채무자의 기한도래 한 예금 기타의 채권과 은행에 대한 대출 등 채무를, 그 대출 등 채무의 기한도래 여부에 불구하고 서면통지에 의하여 상계할 수 있습니다.
- ☞ 이 경우, 상계한 예금 등의 통장 등은 채무자가 그 거래용으로 신고한 도장을 찍거나 서명을 하여, 지체 없이 은행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이 경우, 대출계약 등 약정내용에 따라 채무자가 수수료 (중도 상환수수료 등)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 자금용도외 유용시 주의사항

- 자금용도외 유용이란 기업활동과 관련된 자금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주택구입자금 등 기업활동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거나,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을 전용하여 사용한 경우를 말합니다.
- **자금용도외 유용 시 유용 해당금액은 즉시 상환**하셔야 하며, 신규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0.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대상거래 : 수출입금융 거래관련 상품 이외의 대출성 상품의 경우 (국내 보증, 국내 대출, 국내 구매론, 소구조건부 국내매출 채권 할인등)

□ 청약철회권

- **일반금융소비자**는 1)계약체결일, 2)계약서류를 받은 날, 3) 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로부터 14 일 이내에 계약에 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청약 철회를 위해서는 영업점, 인터넷뱅킹등으로 은행에 청약철회의 의사를 표시해야 하며, 이미 수령한 대출금과 이자 및 비용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 대출계약이 철회권을 행사한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며, 5 영업일 이내에 해당 대출과 관련한 대출정보가 삭제됩니다.

□ 위법계약해지권

- 은행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영업행위 혹은 부단권유행위를 하여 무역금융 거래관련 상품 이외의 대출성 상품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합니다.) 이내에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하며, 거절할 때에는 그 사유를 함께 통지 합니다.

□ 자료열람요구권

-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및 청취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계약체결 및 이해에 관한 자료, 상품 광고자료,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등에 관한 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 은행은 열람요구서로 열람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6영업일 이내에 금융서비스자가 해당 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하며, 법령, 제 3 자의 이익침해, 영업비밀의 침해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의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기 위하여 약정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서, 상담일 이후 신청금액, 신용도, 설정금액 등 변경에 의하여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품가입 후 의문사항 또는 불만(민원)이 있을 경우 귀사와 상담한 **기업금융담당자 (Relationship Manager)** 및 수출입부 **담당자(Business Development Manager)**와 수출입부 **상품개발자에게 전화 (02-2004-0340)** 또는 홈페이지 (<http://www.hsbc.co.kr>)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등에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CD 수익률 설명서

1. CD 수익률의 정의 및 용도

- CD 수익률이란 신용평가회사로부터 AAA 이상의 신용 등급을 받은 시중은행이 발행한 만기가 91 일(만기가 80 일 이상 100 일 이내면 만기 91 일로 본다)인 CD 의 발행수익률로서 기초자료제출기관이 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에 제출한 기초수익률을 기반으로 협회가 산출한 수익률을 말합니다.
- CD 수익률은 금융회사 등이 금융계약이나 거래에서 해당 계약이나 거래의 상대방에게 지급, 교환하고자 하는 금액 또는 금융상품의 가치를 결정할 때 그 기준으로 사용되며, 적용계약의 범위는 대출, 금융투자상품 거래, 어음 할인·인수, 팩토링, 자금예탁 등 (근거: 지표법 시행령 §12① 및 감독규정 §13)입니다.

2. CD 기초수익률의 내용 및 산출기준

- 기초수익률이란 지표법 제 2 조 제 2 호 가목에 따른 기초자료로서 CD 수익률을 산출하기 위하여 「CD 수익률 산출업무규정」(이하 "규정" www.kofia.or.kr 참고) 제 8 조 제 2 항에 따라 선정된 제출기관이 동 규정 제 10 조 제 1 항에 따라 산출하여 협회에 제출하는 수익률을 말합니다.
- 제출기관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43 조제 5 항제 7 호에 따라 CD 의 매매와 그 중개·주선 또는 대리 업무를 겸영하는 금융투자회사 중 CD 거래실적을 기준으로 협회가 선정한 10 개사를 말합니다.
- 기초수익률 산출 등에 활용되는 CD 거래를 적격거래라 하며, 적격거래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거래이어야 합니다
 - AAA 등급 시중은행이 발행한 잔존만기가 45 일 이상 165 일 이내인 CD 거래 일 것
 - 건별 거래량이 100 억원 이상일 것

3. CD 수익률 산출방법, 공시 및 잠재적 한계

- 기초수익률 산출방법: 제출기관은 규정 제 10 조에 따라 기초수익률을 산출하여 제출합니다.

- CD 수익률의 산출 절차: 협회는 제출기관이 제출한 기초수익률 중 상하 각 1 개의 기초수익률을 제외하고 산출평균하여 CD 수익률을 산출하고 매 영업일 4 시 30 분까지 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 공시합니다. (규정 제 11 조 참고)
- CD 수익률 산출은 거래내역과 전문가적 판단기준에 따라 수행되나, 잠재적 한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CD 시장의 급격한 위축으로 인한 CD 실거래 부족 등으로 이 규정에 따라 산출된 CD 수익률이 시장의 금리 상황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할 수 있는 점
 - 건별 그 밖에 비상사태의 발생 등으로 이 규정에 따라 산출된 CD 수익률이 시장의 금리 상황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할 수 있는 점

4. CD 수익률 산출과정 오류 등의 처리와 수정공시

- 협회는 산출업무의 수행 중 오류 등을 발견한 경우 규정 제 17 조에 따라 조치하며, 규정 제 16 조에 따라 이미 공시된 CD 수익률이 수정공시될 수도 있습니다.

5. CD 수익률 산출방법·절차상의 중요 사항 변경 및 관련 금융계약에 미치는 영향

- CD 수익률은 CD 수익률산출규정에 따라 또는 동 규정이 변경됨에 따라 산출방법 및 절차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사와의 금융계약에 따른 금액 또는 가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6. 비상사태 발생과 대체금리의 적용

- 협회가 산출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비상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규정 제 14 조, 제 19 조 등에 따라 산출업무를 중단하는 경우, 해당 중단기간 동안 당행과 귀사간에 협의된 대체금리로 CD 수익률을 대체하여 당행과의 금융계약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7. 산출업무 중단시의 비상계획 및 안내

- CD 수익률 산출업무가 중단되는 경우 사용가능한 대체
금리와 선정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CD 수익률 대체금리	선정 근거
3개월 CD 시가평가 기준수익률(AAA 등급)의 채권평가 5주 평균금리	현재 협회가 고시하는 CD 수익률과 유사한 추이를 보이며, 채권전문 평가사가 산출·공시

- CD 수익률이 산출되지 않아 대체금리로 전환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당행은 홈페이지에 산출업무 중단 사유 및 내용,
기간등을 공시하며 대체금리의 적용개시를
안내합니다.
 - CD 수익률이 산출되지 않는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당행은 동 사실을 전화, 메일, 홈페이지 공시 등을
통하여 안내합니다.